

의안번호	2217645
의 퇴 인	윤후덕의원
회 답 일	2026.8.27.
추계번호	26D1365

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국민참여 보장)	정부는 평화통일기반 조성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 되도록 노력하고,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(평화통일문화 진흥)	정부는 평화통일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함	의무규정
3	안 제7조(국제적 협력과 우호적 환경 조성)	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고,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함	의무규정
4	안 제8조(기타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조치)	정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항 외에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함(제1항)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·제도상의 조치와 예산·인력의 확보 등 재정·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5	안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고 지역의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6	안 제10조(한반도 평화통일방안의 수립)	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경우, 국민의 청원이 있는 경우, 국회의 결의로 통일방안 수립 및 변경을 촉구하는 경우 새로운 통일방안의 수립을 추진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3조(평화통일정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)	정부는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평화통일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적 대화를 추진함	의무규정
8	안 제14조(평화통일전문인력의 양성)	정부는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(이하 “평화통일전문인력”이라고 함)을 양성하여야 하고, 통일부장관은 전문 분야별 평화통일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등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9	안 제15조(평화통일문화의 진흥)	정부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사업을 추진하며, 평화통일문화행사를 개최·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10	안 제16조(평화통일 공공외교)	정부는 국제사회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11	안 제17조(평화통일정책의 대국민 보고)	정부는 평화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 현황을 정리하여 매년 국민에게 보고하여야 함	의무규정
12	안 제19조(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사절)	한반도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통일부에 한반도 평화특별사절을 둘 수 있음	재량규정
13	안 제20조(지역별 평화통일기반 조성)	정부는 지역의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(제1항) 통일부장관은 지역별로 평화통일기반 조성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/재량규정

14	안 제21조(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)	정부는 평화통일기반 조성과 관련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조(국민참여 보장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6조(평화통일문화 진흥)	
3	안 제7조(국제적 협력과 우호적 환경 조성)	
4	안 제8조(기타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조치)	
5	안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
6	안 제10조(한반도평화통일방안의 수립)	
7	안 제13조(평화통일정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)	
8	안 제14조(평화통일전문인력의 양성)	
9	안 제15조(평화통일문화의 진흥)	
10	안 제16조(평화통일 공공외교)	
11	안 제17조(평화통일정책의 대국민 보고)	
12	안 제19조(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사절)	
13	안 제20조(지역별 평화통일기반 조성)	
14	안 제21조(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)	

2. 상세 사유

- 제정안은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의무와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평화통일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
- 제정안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문화 진흥, 사회적 대화, 국제사회와의 협력, 정책 수립, 전문인력의 양성,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다만, 현시점에서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사업의 범위와 규모, 전문인력의 양성 규모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2026년 기준 통일부의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 예산은 총 136억 1,500만원임

[표 1] 통일부 「평화통일기반조성」(1031) 사업 예산 : 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사업	세부사업	예산
평화통일기반조성(1031)	통일정책추진(1031-300)	1,330
	국내통일기반조성(1031-301)	9,425
	국제통일기반조성(1031-302)	2,860
	합계	13,615

자료: 통일부 2026년 예산 사업설명자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